2021년도 제8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1. 4 21.(수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7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제2호: 페이스북 영상 불법성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932건(안건번호 제2021-38982호~3999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38982호~39022호(순번 1번~41번)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에서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39024호(순번 42번)는 게시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과 함께 대중가요 음원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경우 게시자가 직접 촬영, 편집한 영상물이 함께 삭제 또는 전송중단될 수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39978호~39995호(순번 997번~1014번)는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최신 영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89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페이스북 영상 불법성 심의

- 주요내용: 저작권을 침해하는 ‘페이스북’ 내 게시한 영상에 대하여 ‘페이스북 코리아’에 게시물 삭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1-1호~8호)

- 회의결과: ‘페이스북’ 내 게시물 중 저작권을 침해하는 8개의 게시물에 대하여 5개의 게시물은 부결하고, 나머지 3개의 게시물에 대하여는 ‘페이스북 코리아’에게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8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7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6쪽의 불법사이트명, 7쪽의 저작물명, 8쪽의 게시물 내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는 불법사이트명,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C, B, A, D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93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41번은 2명의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이용자들이 다수의 영상물을 각각 스트리밍으로 전체분량을 제공한 사안임. 총 75개 게시물임.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968화 전체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순번 3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968화 전체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였으나, (심의대상 URL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현재 비공개 블로그로 전환된 상태임. 블로그 운영자가 비공개 블로그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네이버 측에서 이용약관 위반

등의 이유로 블로그 접근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순번 5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968화, 969화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였으나, (심의대상 URL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현재 비공개글로 전환된 상태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게시물의 공개 상태에 따라 시정권고 여부를 다르게 볼 것은 아니므로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민원인들이 보호원에 신고하면서 네이버 측에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인의 신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하였다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중복으로 시정권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시정권고 제도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보호원이 보충적으로 행정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음에도 보호원에서 행정조치한 선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오진해 전문위원: 과거에는 네이버가 블로그 자체를 블라인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음. 그러나 올해 3월부터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블라인드한 블로그가 발견되고 있어, 네이버의 정책 방향이 변경되었

음을 추측할 수 있음.

- C 위원: 블라인드 처리할 경우, 네이버 이용약관 위반이나 저작권자의 신고 등 처리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저작권자의 신고일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 시정권고 조치의 경우 저작권법 제133조3에 근거하여 블라인드 처리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C 위원: 본 안건의 경우 블라인드 처리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은데, 제3자인 민원인의 신고로 블라인드 처리된 건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네이버는 음란물의 경우 제3자인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신고만 받고 있음. 보호원의 시정권고나 저작권자의 신고 등이 누적되면 네이버의 자체 규정을 근거로 해당 블로그를 비공개 전환하는 것으로 보여짐.

- 강나래 전문위원: 네이버의 경우 제3자의 접근만 제한하고 있지, 블로그 운영자는 계속 블로그에 접근할 수 있어서 해당 블로그의 게시물을 다른 블로그로 옮길 수 있음. (순번 5번, 8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현재 순번 5번 심의대상 블로그의 운영자가 해당 블로그의 게시물을 순번 8번 심의대상 블로그로 옮기고 있음. 따라서 불법복제물 전송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영상 불법복제물을 공중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 C, D, B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41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2번은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네이버 카페 이용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배경음악으로 대중가요 음원을 전체분량을 이용한 사안임. 총 1개의 게시물임.
(심의대상 URL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음원 전체분량인 약 3분 54초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게시물 본문에는 해당 저작물의 가사와 영상 촬영 장소를 기재하였음.
('☆☆ ☆☆☆☆' 게시판을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다수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영상의 촬영 및 편집에 대하여 게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게시자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목적으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

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을 시정권고할 경우 게시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 함께 삭제 또는 전송중단될 수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D, C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2번은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43번~99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수는 1,897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만화,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SW ‘Adobe Premiere Pro CC 2021’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37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SW ‘Adobe Premiere Pro CC 2021’을 8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권리자 홈페이지에서 30일 무료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이용료는 1개월에 24,000원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자동인증 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음.
(음악 ‘에잇’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94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에잇’을 1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2020 걸그룹콜렉션 상반기 결산’ egg 파일로 음원 287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은 음원 287곡 중 1곡임. 2020. 5. 6.에 발매하였으며, 2021. 4. 20. 기준 멜론 사이트 음원 차트 순위 17위임.
(방송 ‘완다비전’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64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완다비전’을 69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1. 1. 15.에 방영한 1화, 2화를 mkv, srt 파일로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디즈니플러스에서 2021. 1. 15.부터 3. 5.까지 총 9부작 방영함. 참고로 디즈니플러스는 2019년에 디즈니가 출시한 가입형 온라인 스트리밍 OTT 서비스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97번~101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긴급대응저작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2021. 4. 9. 5시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우리나라 영화 ‘낙원의 밤’이 공개와 동시에 불법복제물이 유통됨에 따라 보호원은 해당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심의를 요청함. 심의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심의 요청된 총 19개 게시물을 추가하여 보고 드리겠음.
(순번 997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모바일 웹하드에서 해당 저작물의 전체분량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1003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네이버 밴드 ‘☆☆☆☆☆’에서 해당 저작물의 전체분량을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A, B, C 위원: 순번 43번~1014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3번~101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39023호(순번 42번)은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38982호~39022호(순번 1번~41번), 제2021-39978호~39995호(순번 43번~1014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페이스북 영상 불법성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은 11쪽부터 1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페이스북 영상 불법성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호~2021-8호 중 안건번호 제2021-2호~3호, 제2021-6호(순번 2번, 3번, 6번)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1호, 제2021~4호~5호, 제2021~7호~8호,(순번 1번, 4번, 5번, 7번, 8번)는 부결함.”

3.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8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8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4. 28.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